

의안번호	제 229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269 회)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 출 연 월 일	2008년 4월 7일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29
----------	-----

제출연월일 : 2008년 4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도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주의료원의 재활 치료와 호스피스 등 통합 진료가 요구됨에도 치료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환자 수용에 한계가 있어 특수병동을 증축하고
- 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대추공원과 게이트볼장 편입예정 부지를 매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 재산의 취득

####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
- 증축규모 : 3,066㎡(특수병동 지상 4층 2,850㎡ 지하1층 216㎡)  
※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부지에 수직으로 증축
- 사업기간 : 2008. 4 ~ 2010. 11(3년간)
- 사업비 : 5,960백만원(국비 2,980)
- 연차별 투자계획
  - 2008년도 : 3,714백만원(국비 1,857.0)
  - 2009년도 : 1,123백만원(국비 561.5)
  - 2010년도 : 1,123백만원(국비 561.5)

□ 재산의 처분

《 공공시설 예정부지 매각 》

- 위 치 :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29-17 등 2개 지역
- 매각규모 : 27필지 7,526㎡
  - 장안면 개안리 229-17외 25필지 6,231㎡(대추공원 부지)
  - 내북면 동산리 165-2 1,295㎡(게이트볼장 부지)
- 매각시기 : 2008. 4 ~
- 재산가액 : 80백만원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공공시설 편입예정지 처분재산 내역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건물	1 건	3,066.00	5,960,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 흥덕 사직 554-6	3,066.00	5,960,000	2008~ 2010	청주의료원 특수 병동 확충	증 축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 2008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3)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 량	과표또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 각 사 유	매 수 회 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계	토지	1 건	35,065.00	7,526.00	80,788			
	건물							
	기타							
1	토지	보은 장안 개안 229-17 등 27필지	35,065.00	7,526.00	80,788	'08.4~	공공시설 편입부지	보은군수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 공공시설 편입예정지 처분재산 내역

(단위:m<sup>2</sup>,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산가액	처분사유
	계	27필지		7,526.0	80,788,590	
1	보은 장안 개안	229-17	답	865.0	8,433,750	대추공원 조성 편입 예정부지
2	보은 장안 개안	229-18	답	1,418.0	13,825,500	
3	보은 장안 개안	229-24	답	60.0	592,800	
4	보은 장안 개안	229-25	답	166.0	1,640,080	
5	보은 장안 개안	229-26	답	236.0	2,331,680	
6	보은 장안 개안	229-27	답	257.0	2,539,160	
7	보은 장안 개안	229-28	답	250.0	2,470,000	
8	보은 장안 개안	229-29	답	236.0	2,331,680	
9	보은 장안 개안	229-30	답	240.0	2,371,200	
10	보은 장안 개안	229-31	답	202.0	1,995,760	
11	보은 장안 개안	229-32	답	215.0	2,142,200	
12	보은 장안 개안	229-33	답	162.0	1,600,560	
13	보은 장안 개안	229-34	답	320.0	3,161,600	
14	보은 장안 개안	229-35	답	148.0	1,462,240	
15	보은 장안 개안	229-36	답	152.0	1,501,760	
16	보은 장안 개안	229-37	답	141.0	1,393,080	
17	보은 장안 개안	229-38	답	143.0	1,412,840	
18	보은 장안 개안	229-39	답	152.0	1,501,760	
19	보은 장안 개안	229-41	답	179.0	1,768,520	
20	보은 장안 개안	229-42	답	183.0	1,808,040	
21	보은 장안 개안	229-43	답	148.0	1,412,840	
22	보은 장안 개안	229-44	답	130.0	1,284,400	
23	보은 장안 개안	229-45	답	96.0	948,480	
24	보은 장안 개안	229-46	답	33.0	326,040	
25	보은 장안 개안	229-47	답	86.0	849,680	
26	보은 장안 개안	229-48	답	13.0	128,440	
27	보은 내북 동산	165-2	답	1,295.0	19,554,500	내북 게이트볼장 편입 예정부지

#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 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 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35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 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0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 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 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 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 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 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